

「KB 청년도약계좌」 특약 변경 안내

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1 항에 의거 약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변경된 약관은 KB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(www.kbstar.com > 고객센터 > 서식/약관/설명서> 예금/채권 > 약관)에서 조회 및 교부 가능합니다.

- 다 음 -

□ 대상약관: 「KB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
□ 시 행 일: 2024. 04. 08(월)

□ 기존고객 적용 여부: 적용

□ 변경내용: 제 2 조 가입대상, 제 6 조 이자 지급 방법, 제 9 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, 제 10 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현 행	변 경
<p>제 1 조 (생략)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~나. (생략)</p> <p>다. 가입대상 확인 시 가목, 나목에도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</p> <p>3. (생략)</p> <p>가.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일 것 (이하 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~⑥ (생략)</p> <p>제 3 조~제 5 조 (생략)</p> <p>제 6 조 이자 지급 방법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</p>	<p>제 1 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(현행과 동일)</p> <p>가~나.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가입대상 확인 시 가목, 나목에도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,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</p> <p>3. (현행과 동일)</p> <p>가.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일 것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4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~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3 조~제 5 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6 조 이자 지급 방법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</p>

계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(추가)

④~⑤ (생략)

제 7 조~제 8 조 (생략)

제 9 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
① (생략)

1. (생략)

2. (생략)

가~바. (생략)

(추가)

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10 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①~⑦ (생략)

⑧ 「소득세법」 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[표 1]의 총급여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를 적용합니다.

제 11 조~제 13 조 (생략)

부 칙 (생략)

(추가)

계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(단,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)

④~⑤ (현행과 동일)

제 7 조~제 8 조 (현행과 동일)

제 9 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
① (현행과 동일)

1. (현행과 동일)

2. (현행과 동일)

가~바. (현행과 동일)

사.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(배우자의 출산 포함)

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 61 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10 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①~⑦ (현행과 동일)

⑧ 제 2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6%로 적용합니다.

제 11 조~제 13 조 (현행과 동일)

부 칙 (현행과 동일)

부 칙

이 약관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. (단, 제 2 조제 1 항제 2 호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 신청한 고객부터 적용하며, 제 2 조제 1 항제 3 호 개정내용은 2024년 2월 22일 신청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.)

※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3 항에 의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1 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KB 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KB 국민은행